
복지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복지과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운영(성립전)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0
사업규모	1개 단체		
사업목적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관련 복지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복지전달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제42조
	해당조례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3조
<p>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p>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2. 정부 및 공공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경기도, 시·군·구 위탁사업 3. 국제교류 및 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42,000	42,000	0	42,000	0	
국비	0	0		0	0	
도비	12,600	12,600		12,600	0	
시비	29,400	29,400		29,400	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2,000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 봉사 사업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인건비(사무국장) - 기본급 : 2,649,400원*12월 = 31,792,800원 - 수당 등 : 10,016,200원 · 운영비 : 191,000원	= 41,809 = 191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도비보조사업 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비 편성
※경기도-191(2024.01.04.)
- 사회복지협의회 담당인력(사무국장)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대비 동결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증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도비 보조금 교부
 - 2024.01. : 성립전예산 편성
 - 2024.01.~02. : 보조금 지급
 - 2024.12. :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인건비(4대보험 포함) : 38,600천원 - 운영비 : 3,400천원
2023	- 인건비(4대보험 포함) : 40,045천원 - 운영비 : 1,955천원
2024	- 성립전예산 : 4,2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42,000	42,000	-	-	
2023	42,000	42,000	-	-	
2024	4,200	4,200	-	-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강신준	담당자	복지 7급 차은이	전화	2619
-----	-----	------------	-----	-----------	----	------

보훈회관 건립

사업기간	2020. 8. ~ 2025. 3.	사업위치	김포시 풍무동 978번지
사업규모	연면적 1,833.87㎡(지하1층 ~ 지상4층)		
사업목적	노후화된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보훈단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보훈서비스를 제공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호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4,041,000	2,500,000	0	-1,541,000	
국비	250,000	250,000		0	
도비		0		0	
시비	3,791,000	2,250,000		-1,541,000	특례특정금 포함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00,000	
보훈회관 건립	401-01 시설비	· 공사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분석(노유자시설)] ○ 건축연면적 1,833.87㎡ × 3,952,754원 = 72.6억원 - 건축(기계설비) : 72.6억원 × 71.19% - 전기 : 72.6억원 × 9.79% - 통신 : 72.6억원 × 4.68% - 소방 : 72.6억원 × 3.85% - 조경 및 토목 : 72.6억원 × 10.49% * 공사 계약 및 착공에 따른 차수별 공사금액	= 2,126,000	
	401-02 감리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 일임금액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손해배상보험료 등)	= 374,000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3월 착공으로 공사비용 발생에 따른 예산 요구
- 보훈단체 통합관리 운영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보훈서비스 제공
-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승계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담당관-2233(2023. 12. 29.)호에 따른 국비 교부 확정

□ 예산증감 사유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2024년도 사업비 편성
- 공사 착공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승인	완료	-	-	-	승인	-	-	-
일자	2023.11.	2023.03.(도)	2021.05.	-	-	-	2021.01.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8. ~ 11. : 추진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1. 1. ~ 3.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21. 4. ~ 5. :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
- 2021. 6. ~ 8. : 건축기획심의 안건 상정 및 승인(원안가결)
- 2021. 9. ~ 2022. 2. : 조달청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착수
- 2022. 3. ~ 2023. 3. : 실시설계 용역 진행
- 2023. 3. :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 2023. 10. ~ 2024. 1. : 감리단, 시공사 입찰 및 계약
- 2024. 1. : 설계용역 준공
- 2024. 3. ~ 2025. 3. : 공사 착공 및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분	총사업비(A+B+E)	기투자(A)	2024년 예산 소요액(B)			향후투자(E)	비고
			계(B=C+D)	본예산(C)	1회추경(D)		
계	10,130,420	6,296,420	2,500,000	0	2,500,000	1,334,000	
공정별	설계비	275,000	275,000	0			
	보상비	1,449,420	1,449,420	0			
	공사비	7,260,000	3,800,000	2,126,000		2,126,000	1,334,000
	감리비	1,100,000	726,000	374,000		374,000	
	부대비	46,000	46,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2022. 3. :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진행 - 2022. 4. : 인천보훈지청 지방보훈회관 건립 국비 교부 신청
2023	- 2023. 3. : 경기도 투자심사 승인(적정) - 2023. 4. : 인천보훈지청 지방보훈회관 건립 국비 교부 결정(5억원) - 2023. 4. : 특별교부세 교부 신청 - 2023. 7. :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10억) - 2023. 10. : 인천보훈지청 지방보훈회관 건립 국비 2.5억원(1차) 교부 - 2023. 10.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신청 - 2023. 11. : 총사업비 증액 보고 - 2023. 12.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9억) - 2023. 12. : 시공사 선정 및 계약(건축, 전기, 통신, 소방)
2024	- 2024. 1. : 설계안전성검토 완료(적정) - 2024. 1.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806,000	211,367	594,633	0	
2023	4,635,633	22,000	4,613,633	0	
2024	4,613,633	77,322	-	4,536,311	2.13.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복지과	사업규모	연면적 1,833.87㎡(지하1층~지상4층)	1회추경 예산요구액 (천원)	2,500,000
부기명 (세부사업)	보훈회관 건립	사업위치	김포시 풍무동 978번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강신준	담당자	복지8급 김원태	전화	2620
-----	-----	------------	-----	----------	----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70명		
사업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제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101,359	44,100	46,620	-2,520	-57,259	
국비	70,862	30,870	32,640	-1,770	-39,992	
도비	15,261	6,615	6,990	-375	-8,646	
시비	15,236	6,615	6,990	-375	-8,621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20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308-1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경정(63,000원*10회*70명)-기정(63,000원*10회*74명)	= -2,520	

□ 예산요구 사유

- 청년실업, 주거불안 등 사회적 불안, 우울 등 사회적 위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대응·지원 필요
- 심리·정서 지원 필요한 청년세대의 낮은 구매력으로 공공부분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복지사업과-121(2024.1.3.)호 확정내시(가내시 지원대상 74명-> 70명 변경) 관련 감액
- 2024년 하반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사업 전환 예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2.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신규) 이용자 모집 및 개시
- 2024.05.~06.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 2024.05.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신규 및 재판정) 이용자 모집 및 개시
- 2024. 하반기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종료 및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의 전환(시기 미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사회보장정보원 예약 : 43,200천원 - 이용자 63명 - 18개 제공기관 일자리 제공 및 소득 창출
2023	- 사회보장정보원 예약 : 101,384천원 - 이용자 128명 - 20개 제공기관 일자리 제공
2024	- 사회보장정보원 예약(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43,200	43,200	0	-	
2023	101,384	101,384	-	-	
2024	46,620	-	-	46,62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희망복지팀장 홍지혜	담당자	사회복지7급 최명신	전화	2635
-----	-----	------------	-----	------------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50가구		
사업목적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2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위임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0	20,000	20,000	0	20,000	
국비	0	10,000	10,000	0	10,000	
도비	0	6,000	6,000	0	6,000	
시비	0	4,000	4,000	0	4,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201-03 행사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 : 4,000,000원*2개소	=	-8,000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프로그램 운영 : 4,000,000원*2개소	=	8,000

□ 예산요구 사유

-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통계목 변경(행사운영비→사회복지사업보조)

□ 예산증감 사유

- 통계목 변경으로 예산 증감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06. :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전 준비
- 2024.07.~ : 서비스 이용자 확정 및 사업 시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	-	-	-	
2023	-	-	-	-	
2024	20,000	-	-	-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희망복지팀장 홍지혜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혜란	전화	2632
-----	-----	------------	-----	------------	----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26명		
사업목적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질병,고립 등) 및 가족돌봄청년의 일상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0	71,428	71,477	-49	71,428	
국비	0	50,000	50,000	0	50,000	
도비	0	10,714	10,763	-49	10,714	
시비	0	10,714	10,714	0	10,714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9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308-1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일상돌봄지원 사업 위탁사업비 : 경정(2,478,000*26명)-기정(2,749,115*26명)	= -7,049	
	201-01 사무관리비	· 일상돌봄지원 사업 홍보비 7,000,000원	= 7,000	

□ 예산요구 사유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의 신규사업으로 낮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사업홍보 위한 운영비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복지사업과-249(2024.1.4.)호 확정내시 변경 관련 감액
- 사업홍보 및 제공기관 선정 등을 위해 운영비 예산 최대 20% 내외 필수 편성(경기도 복지사업과-250(2024.1.4.)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06. : 사업계획 수립 및 제공기관 모집·홍보
- 2024.07.~ : 서비스 이용대상자 모집
- 2024.07.~12. : 서비스 제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사업홍보 및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	-	-	-	
2023	-	-	-	-	
2024	71,477	-	-	-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희망복지팀장 홍지혜	담당자	사회복지7급 최명신	전화	2635
-----	-----	------------	-----	------------	----	------

통합사례관리사 대체인력 채용

사업기간	2024. 5.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명		
사업목적	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하여 업무공백 방지하고자 함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 제2항, 제4항
	해당조례	김포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0	24,920	0	24,920	24,920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0	24,920	0	24,920	24,920	
기타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4,920	
통합사례관리사 대체인력 채용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인건비(육아휴직 대체근로자): 2,340,000원*1명*8월 · 주휴수당: 89,680원*1명*35일 · 4대보험료 부담금: 21,860,000원*14%	= 18,720 = 3,139 = 3,060	

□ 예산요구 사유

- 마산동 통합관리사의 출산과 육아휴직 사용으로 업무공백 발생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복지 수요의 신속한 발굴로 업무연장성 유지
- 저소득층 인구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현장의 사회복지업무 부담 경감

□ 예산증감 사유

- 통합사례관리사 업무공백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인건비 발생(2024. 5. 이후)
- 통합사례관리사 자체 인력운영비 감액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시비부담금 완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2025. 7. : 마산동 통합사례관리사 출산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 2024. 3.~2024. 4. : 대체인력 모집공고 및 신규채용
- 2024. 5.~2024. 12. :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 해당없음

(단위: 천원)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희망복지팀장 홍지혜	담당자	사회복지7급 최명신	전화	2635
-----	-----	------------	-----	------------	----	------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양촌읍 황금1로80번길 55, 3층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활센터 운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법령 위임규정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340,527	356,980	366,424	-9,444	16,453	
국비	238,369	249,886	256,497	-6,611	11,517	
도비	30,647	32,128	32,978	-850	1,481	
시비	71,511	74,966	76,949	-1,983	3,455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444	
지역자활센터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인건비: 경정(4,469,680원×6인×12월)-기정(4,498,470원×6인×12월) · 운영비: 경정(2,700,230원×12월)-기정(3,314,520원×12월)	= -2,073 -7,371	

□ 예산요구 사유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김포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분기 : 지역자활센터 보조금 검토 및 교부, 정산서 확인
- 점 검 : 정기 점검 연 1회, 필요시 수시 점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자활센터 운영비 : 자활센터 인건비(6명) 및 운영비 332,889천원 지원
2023	- 자활센터 운영비 : 자활센터 인건비(6명) 및 운영비 340,527천원 지원
2024	- 자활센터 운영비 : 1분기 인건비(6명) 및 운영비 100,145천원 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332,889	332,774	-	115	
2023	340,527	340,527	-	-	
2024	366,424	100,145	-	266,279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사회복지7급 이승미	전화	2623
-----	-----	------------	-----	------------	----	------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6명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37,140	34,750	29,745	5,005	-2,390	
국비	26,000	24,300	20,801	3,499	-1,700	
도비	5,570	5,225	4,472	753	-345	
시비	5,570	5,225	4,472	753	-34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5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경정(482,640원 x 6명 x 12개월)-기정(413,120원 x 6명 x 12개월) =	5,005	

□ 예산요구 사유

- 저소득(국민기초, 차상위) 가구 중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중증질환자 및 한부모가정 등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서비스 가격 상승에 따른 변경 내시 증액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 매월 : 서비스 비용 정기 지급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예탁처 : 사회보장정보원)
- 2024.10. : 가사·간병방문지원 제공기관 점검(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가사간병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12명
2023	- 가사간병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6명
2024	- 가사간병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6명 진행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54,171	54,171	-	4,115	
2023	31,000	31,000	-	-	
2024	29,745	2,780	-	26,965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복지8급 장민규	전화	5182
-----	-----	------------	-----	----------	----	------

통장사례관리자 운영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김포지역자활센터내
사업규모	1명		
사업목적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탈수급 촉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제1항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37,220	38,151	37,220	931	931	
국비	26,054	26,706	26,054	652	652	70%
도비	3,350	3,434	3,350	84	84	9%
시비	7,816	8,011	7,816	195	195	21%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31	
통장사례 관리자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통장사례관리자 인건비 : 경정(3,127,860원*1명*12월)-기정(3,051,450원*1명*12월)	=	917
		· 교육비, 홍보비 : 경정(51,380원*1개소*12월)-기정(50,220원*1개소*12월)	=	14

□ 예산요구 사유

-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사업 대상자의 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가입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자산형성사업을 담당하는 통장사례관리자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분기 : 보조금 지급 및 정산서 검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통장사례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 : 1명
2023	- 통장사례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 : 1명
2024	- 통장사례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 : 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36,241	36,241	-	-	
2023	37,220	37,220	-	-	
2024	37,220	9,237	-	27,983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행정8급 조여정	전화	2624
-----	-----	------------	-----	----------	----	------

희망키움통장 I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3명		
사업목적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탈수급 촉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제1항
	법령 위임규정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24,000	16,000	11,867	4,133	-8,000	
국비	21,600	14,400	10,677	3,723	-7,200	90%
도비	720	480	357	123	-240	3%
시비	1,680	1,120	833	287	-560	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133	
희망키움 통장 I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근로소득장려금(월평균 매칭 지원금) : 경정(444,450원*3명*12월)-기정(329,640원*3명*12월)	= 4,133	

□ 예산요구 사유

- 대상자의 만기 해지까지 3년간 근로소득 장려금 매칭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생계·의료 수급자의 본인적립금(50천원/100천원)에 대해 가구소득에 비례하여 매칭지원
- 2024년도 희망키움통장 I 사업비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 매월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 (예탁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6명
2023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4명
2024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3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6,660	16,660	-	-	
2023	24,000	24,000	-	-	
2024	11,867	2,266	-	9,601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행정8급 조여정	전화	2624
-----	-----	------------	-----	----------	----	------

희망키움통장 II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59명		
사업목적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탈수급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제1항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130,000	72,026	65,028	6,998	-57,974	
국비	117,000	64,513	58,528	5,985	-52,487	90%
도비	3,900	2,254	1,950	304	-1,646	3%
시비	9,100	5,259	4,550	709	-3,841	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998	
희망키움 통장 II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근로소득장려금(월평균 매칭 지원금) : 경정(101,730원*59명*12월)-기정(91,850원*59명*12월)	= 6,998	

□ 예산요구 사유

- 대상자의 만기 해지까지 3년간 근로소득 장려금 매칭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의 본인적립금(100천원)에 대해 100천원 매칭 지원
- 2024년도 희망키움통장 II 사업비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 매월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 (예탁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100명
2023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70명
2024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59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12,800	112,800	-	-	
2023	130,000	103,119	-	26,881	
2024	65,028	11,826	-	53,202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행정8급 조여정	전화	2624
-----	-----	------------	-----	----------	----	------

희망저축계좌 I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31명		
사업목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탈수급 촉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제1항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72,000	82,665	82,258	407	10,665	
국비	64,800	74,028	74,028	0	9,228	90%
도비	2,160	2,591	2,469	122	431	3%
시비	5,040	6,046	5,761	285	1,006	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7	
희망저축 계좌 I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근로소득장려금(월평균 매칭 지원금) : 경정(222,210원*31명*12월)-기정(221,110원*31명*12월)	≒ 407	

□ 예산요구 사유

- 대상자의 만기 해지까지 3년간 근로소득 장려금 매칭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생계·의료 수급자에게 본인적립금(100천원~500천원)에 대해 300천원 매칭 지원
- 2024년도 희망저축계좌 I 사업비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 매월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 (예탁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7명
2023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21명
2024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3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9,800	19,800	-	-	
2023	72,000	72,000	-	-	
2024	82,258	13,571	-	68,687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행정8급 조여정	전화	2624
-----	-----	------------	-----	----------	----	------

희망저축계좌 II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97명		
사업목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탈수급 촉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제1항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70,000	84,487	84,070	417	14,487	
국비	63,000	75,660	75,660	0	12,660	90%
도비	2,100	2,648	2,523	125	548	3%
시비	4,900	6,179	5,887	292	1,279	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17	
희망저축 계좌 II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근로소득장려금(월평균 매칭 지원금) : 경정(72,590원*97명*12월)-기정(72,230원*97명*12월)	= 417	

□ 예산요구 사유

- 대상자의 만기 해지까지 3년간 근로소득 장려금 매칭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의 본인적립금(100천원~500천원)에 대해 100천원 매칭 지원
- 2024년도 희망저축계좌 II 사업비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 매월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 (예탁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37명
2023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70명
2024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97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26,000	26,000	-	-	
2023	70,000	70,000	-	-	
2024	84,070	13,870	-	70,2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행정8급 조여정	전화	2624
-----	-----	------------	-----	----------	----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3명		
사업목적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탈수급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제1항
	법령 위임규정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33,524	11,662	13,238	-1,576	-21,862	
국비	30,171	10,496	11,914	-1,418	-19,675	90%
도비	1,006	350	397	-47	-656	3%
시비	2,347	816	927	-111	-1,531	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76	
청년희망 키움통장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근로소득장려금(월평균 매칭 지원금) : 경정(323,930원*3명*12월)-기정(367,720원*3명*12월)	= -1,576	

□ 예산요구 사유

- 대상자의 만기 해지까지 3년간 근로소득 장려금 매칭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생계급여수급자 청년(만15~39세)에게 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 적립
 - 지원내용 : 본인 저축 없음 + 지원금 월 최대 599천원
- 2024년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 매월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 (예탁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4명
2023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3명
2024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3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7,366	17,366	-	-	
2023	33,524	33,524	-	-	
2024	13,238	1,859	-	11,379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행정8급 조여정	전화	2624
-----	-----	------------	-----	----------	----	------

청년저축계좌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29명		
사업목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자립지원 촉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제1항
	법령 위임규정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165,600	72,702	95,527	-22,825	-92,898	
국비	149,046	65,432	85,974	-20,542	-83,614	90%
도비	4,960	2,181	2,866	-685	-2,779	3%
시비	11,594	5,089	6,687	-1,598	-6,505	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825	
청년 저축계좌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근로소득장려금(월평균 매칭 지원금) : 경정(208,910원*29명*12월)-기정(274,500원*29명*12월)	= -22,825	

□ 예산요구 사유

- 대상자의 만기 해지까지 3년간 근로소득 장려금 매칭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만15세~39세)의 본인적립금(100천원)에 대해 300천원 매칭 지원
- 2024년도 청년저축계좌 사업비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 매월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 (예탁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62명
2023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45명
2024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29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215,790	215,790	-	-	
2023	165,600	165,600	-	-	
2024	95,527	11,185	-	84,342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행정8급 조여정	전화	2624
-----	-----	------------	-----	----------	----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434명		
사업목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지원 촉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제1항
	법령 위임규정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249,100	1,170,090	1,213,333	-43,243	920,990	
국비	224,199	1,053,081	1,092,000	-38,919	828,882	90%
도비	7,461	35,103	36,400	-1,297	27,642	3%
시비	17,440	81,906	84,933	-3,027	64,466	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3,243	
청년내일 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근로소득장려금(월평균 매칭 지원금) : 경정(224,680원*434명*12월)-기정(224,700원*450명*12월)	= -43,243	

□ 예산요구 사유

- 대상자의 만기 해지까지 3년간 근로소득 장려금 매칭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이하 청년(만15세~39세 이하)에게 본인적립금(100천원~500천원)에 대해 300천원 매칭 지원
- 2024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사업비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450명→434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 매월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 (예탁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158명
2023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307명
2024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434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0,593	10,593	-	-	
2023	249,100	140,625	-	108,475	
2024	1,213,333	200,199	-	1,013,134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행정8급 조여정	전화	2624
-----	-----	------------	-----	----------	----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347명		
사업목적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인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지원 촉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제1항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791,939	296,319	315,585	-19,266	-495,620	
국비	712,745	266,687	284,026	-17,339	-446,058	90%
도비	23,758	8,890	9,468	-578	-14,868	3%
시비	55,436	20,742	22,091	-1,349	-34,694	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9,266	
청년내일 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근로소득장려금(월평균 매칭 지원금 : 경정(71,160원*347명*12월)-기정(71,080원*370명*12월))	= -19,266	

□ 예산요구 사유

- 대상자의 만기 해지까지 3년간 근로소득 장려금 매칭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연소득 600만원~2400만원 이하의 차상위초과 청년(만19세~34세 이하)에게 본인적립금(100천원~500천원)에 대해 100천원 매칭 지원
- 2024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사업비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370명→347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 매월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분기 : 서비스 비용 예탁 (예탁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158명
2023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307명
2024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347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55,822	155,822	-	-	
2023	791,939	786,930	-	5,009	
2024	315,585	52,073	-	263,512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생활보장팀장 고명남	담당자	행정8급 조여정	전화	2624
-----	-----	------------	-----	----------	----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기간	2024.1 ~ 2024.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의료급여관리사 3명		
사업목적	질병·빈곤 등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는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의료급여법		제5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둔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109,400	118,000	112,135	5,865	8,600	
국비	87,520	94,400	89,708	4,692	6,880	80%
도비	15,316	16,520	15,699	821	1,204	14%
시비	6,564	7,080	6,728	352	516	6%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865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 경정(107,860,000원) - 기정(101,995,000원) (기본급 변경 2,789,356원 - 당초 2,626,440원)*3명*12월=5,865,000원)	= 5,865	

□ 예산요구 사유

- 의료급여사례관리 담당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공무직 3명)

□ 예산증감 사유

- '24년 기본급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예산 증액 ※경기도 복지사업과-3160(2024.02.01.)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2024년 의료급여 확정 내시
- 2024. 매월 급여, 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3명 인건비 지급(집행률: 100%)
202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3명 인건비 지급(집행률: 100%)
2024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3명 인건비 지급(2024. 2. 13 기준 집행률: 8.3%)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14,322	114,322	-	-	
2023	111,000	111,000	-	-	
2024	112,135	9,615	-	102,52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의료급여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추유선	전화	2622
-----	-----	------------	-----	------------	----	------

의료급여사업 지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외
사업규모	8,138명		
사업목적	의료급여사업 추진 시 필요한 전산소모품, 홍보물 제작, 교육, 여비, 의료급여심의 운영 등을 지원하여 의료급여 업무의 원활한 운영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의료급여법		제26조 제2항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15,600	14,900	14,800	100	-700	
국비	12,480	11,920	11,840	80	-560	
도비	2,184	2,086	2,072	14	-98	
시비	936	894	888	6	-42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	
의료급여 사업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경정(14,900,000원) - 기정(14,800,000원)	= 100	

□ 예산요구 사유

- 의료급여 사업 추진 관련 홍보용품 및 홍보리플렛 제작, 의료급여관리사 교육비 및 여비 지급,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등 행정경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경기도 복지사업과-398(2024.01.05.)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국도비 보조금 부담 확정내시
- 2024.04.~2024.09. :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교육 실시
- 2024.07. : 의료급여관리사 경력자 직무교육
- 매월 : 의료급여관리사 여비 지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사업추진 사무용품, 수급권자 홍보용 물품 제작 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의료급여관리사 교육비 지원 : 480천원 - 의료급여사업 사무용품 구입 : 1,545천원 - 의료급여사업 홍보물품 구입 : 5,775천원 - 의료급여관리사 여비 지급 : 2,880천원
2023	- 의료급여관리사 교육비 지원 : 720천원 - 의료급여사업 사무용품 구입 : 2,874천원 - 의료급여사업 홍보물품 구입 : 1,837천원 - 의료급여관리사 여비 지급 : 4,252천원
2024	- 의료급여사업 사무용품 구입 : 118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1,700	10,680	-	1,020	
2023	15,600	14,352	-	1,248	
2024	14,800	118	-	14,682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의료급여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추유선	전화	2622
-----	-----	------------	-----	------------	----	------

의료급여사업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관내·외
사업규모	8,138명		
사업목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복지 향상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의료급여법		제5조
	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② 제항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488,300	597,300	564,700	32,600	109,000	
국비	390,640	477,840	451,760	26,080	87,200	
도비	68,362	83,622	79,272	4,350	15,260	
시비	29,298	35,838	33,668	2170	6,54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2,600	
의료급여 사업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본인부담금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 경정(597,300,000원) - 기정(564,700,000원)	= 32,600	

□ 예산요구 사유

-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경기도 복지사업과-398(2024.01.05.)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국도비 보조금 부담 확정내시
- 반기별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 분기별 :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및 본인부담 보상금 등 지급
- 수 시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환급금 등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비 : 1,344건 235,447천원 · 장애인보조기기 : 163건 138,655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 3,392건 108,104천원 ·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 1,506건 20,186천원 · 본인부담 보상금 및 기타 환급금 : 344건 6,848천원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비 : 1,412건 243,617천원 · 장애인보조기기 : 156건 124,212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 1,001건 57,464천원 ·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 2,219건 23,048천원 · 본인부담 보상금 및 기타 환급금 : 1,676건 39,222천원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비 : 342건 66,658천원 · 장애인보조기기 : 37건 29,820천원 ·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 629건 5,092천원 · 본인부담 보상금 및 기타 환급금 : 12건 5,26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517,000	509,240	-	7,760	
2023	488,300	487,563	-	737	
2024	564,700	106,830	-	457,87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의료급여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수현	전화	5293
-----	-----	------------	-----	------------	----	------

의료급여사업 지원 -재가의료급여사업-

사업기간	2024.1 ~ 2024.12.	사업위치	관내·외
사업규모	3명		
사업목적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권자에게 재가 서비스를 지원하여, 수급자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적 입원문제 해소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의료급여법		제5조의2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둔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0	6,372	16,400	-10,028	6,372	
국비	0	5,098	13,120	-8,022	5,098	
도비	0	892	2,296	-1,404	892	
시비	0	382	984	-602	382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28	
의료급여 사업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의료급여사업)	· 경정(6,372,000원) - 기정(16,400,000원)	= -10,028	

□ 예산요구 사유

○ 재가의료급여 수행을 위한 필수급여(의료 및 돌봄) 및 선택급여(냉·난방 등), 부가급여 비용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하반기 전국시행('24년 7월)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 경기도 복지사업과-398(2024.01.05.)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국도비 보조금 부담 확정내시
- 2024. 7. : 대상자 선정에 따른 월별 서비스 연계비용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 해당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의료급여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추유선	전화	2622
-----	-----	------------	-----	------------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사업기간	2024.1 ~ 2024.12.	사업위치	관내·외
사업규모	8,138명		
사업목적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복지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 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의료급여법		제27조 제1항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2,951,388	3,582,595	3,434,604	147,991	631,207	
국비		0				
도비		0				
시비	2,951,388	3,582,595	3,434,604	147,991	631,207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7,991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경정(3,582,595,000원) - 기정(3,434,604,000원)	= 147,991	

□ 예산요구 사유

-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외래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2024년 자치단체부담금 변경 ※경기도 복지사업과-398(2024.01.05.)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2024년 의료급여 확정내시
- 2024. 분기별 : 진료비 부담금 납부(경기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정산(4회)
2023	-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정산(4회)
2024	-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정산(1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2,818,893	2,818,893	-	-	
2023	2,951,388	2,951,388	-	-	
2024	3,434,604	783,072	-	2,651,532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의료급여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추유선	전화	2622
-----	-----	------------	-----	------------	----	------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사업기간	2024.1 ~ 2024.12.	사업위치	관내·외
사업규모	8,138명		
사업목적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복지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의료급여법		제27조 제1항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4,974	5,442	5,130	312	468	
국비						
도비						
시비	4,974	5,442	5,130	312	468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12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경정(5,442,000원) - 기정(5,130,000원)	= 312	

□ 예산요구 사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탁에 따른 수수료 발생분 지급 ※ 국·도비는 도에서 집행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경기도 복지사업과-398(2024.01.05.)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국도비 보조금 부담 확정내시
- 2024. 분기별 : 위탁수수료 납부(경기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의료급여수급권자 위탁수수료 정산(4회)
2023	. 의료급여수급권자 위탁수수료 정산(4회)
2024	. 의료급여수급권자 위탁수수료 정산(1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4,794	4,794	-	-	
2023	4,974	4,974	-	-	
2024	5,130	1,360	-	3,77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과	의료급여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추유선	전화	2622
-----	-----	------------	-----	------------	----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응급관리요원 2명, 장비 652대		
사업목적	독거노인 가정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128,128	128,108	126,318	1,790	-20	
국비	64,064	64,054	63,159	895	-10	
도비		0			0	
시비	64,064	64,054	63,159	895	-1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90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사업비 : 경정(67,274,000원)-기정(65,484,000원)	= 1,790	

□ 예산요구 사유

-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의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신속히 감지하고 대처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안전한 생활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국비 변경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12. : 인건비 및 사업비 보조금 지원(분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응급안전장비 지원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323명
2023	응급안전장비 지원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599명
2024	응급안전장비 지원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629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88,524	88,524	-	-	
2023	128,128	128,128	-	-	
2024	126,318	30,729	-	95,589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남혜진	담당자	복지7급 이하영	전화	2204
-----	--------	------------	-----	----------	----	------

경로당 사회활동비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경로당 375개소		
사업목적	경로당 어르신들의 사회활동비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 유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노인복지법	제4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7조 시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노인일자리 등의 알선과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328,500	498,600	337,500	161,100	170,100	
국비		0			0	
도비	32,850	49,860	33,750	16,110	17,010	
시비	295,650	448,740	303,750	144,990	153,09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61,100	
경로당 사회활동비	301-14 기타보상금	· 사회활동비 : 경정(133,000원*375개소*10월)-기정(100,000원*375개소*9월)	÷ 161,100	

□ 예산요구 사유

- 지역 청소, 환경감시 등 생산적인 활동 참여시 활동비용 지원하여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 유도

□ 예산증감 사유

- 월별 지급비 (100,000원→133,000원) 및 지급대상 월 (9개월→10개월) 확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12. : 2024년 경로당 운영 계획 수립
- 2024.03.~12. : 사회활동비 신청에 따른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경로당 361개소 사회활동비 지급
2023	경로당 368개소 사회활동비 지급
2024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324,000	295,900		28,100	
2023	328,500	327,700		800	
2024	337,500	-		337,5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남혜진	담당자	행정7급 나가은	전화	2249
-----	--------	------------	-----	----------	----	------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12.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사업목적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노인복지법	제4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12,000	18,000	12,000	6,000	6,000	
국비		0			0	
도비	1,200	1,800	1,200	600	600	
시비	10,800	16,200	10,800	5,400	5,4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경정(18,000,000원)-기정(12,000,000원)	= 6,000	

□ 예산요구 사유

-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변경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보조금 교부(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 2024.04.~12. :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
- 2024.12. : 보조금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경로당 24개소 여가 프로그램 운영
2023	경로당 27개소 여가 프로그램 운영
2024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2,000	12,000	-	-	
2023	12,000	12,000	-	-	
2024	12,000	-	-	12,0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남혜진	담당자	행정7급 나가은	전화	2249
-----	--------	------------	-----	----------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980명		
사업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노인복지법		제23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당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해당조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지원 및 보급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8,434,205	12,595,013	12,594,698	315	4,160,808	
국비	4,217,102	6,297,506	6,297,349	157	2,080,404	
도비	632,566	944,626	944,602	24	312,060	
시비	3,584,537	5,352,881	5,352,747	134	1,768,344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1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경정(12,595,013,000원)-기정(12,594,698,000원)	= 315	

□ 예산요구 사유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노인 소득보전 및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24년 노인일자리 담당자 고용부담금 및 제수당 지급개선안'에 따라 감액조정된 공무원 사회보험료(315,000원)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으로 이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및 분기별 보조금 교부
- 2024.10.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4개소 지도점검
- 2024.11. ~ 12.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김포원조할매두부사업 외 42개 사업에 7,961,251천원 지원, 2,387명 참여(101%)
2023	- 김포원조할매두부사업 외 43개 사업에 8,185,382천원 지원, 2,679명 참여(101%)
2024	- 김포원조할매두부사업 외 47개 사업에 7,015,702천원 지원, 2,772명 참여(93%)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8,276,426	7,961,251		315,175	
2023	8,434,205	8,185,382	-	237,904	
2024	12,594,698	7,200,078	-	5,394,62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남혜진	담당자	복지8급 박주연	전화	2206
-----	--------	------------	-----	----------	----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대한노인회, 북부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종사자 33인		
사업목적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처우개선(보수격차 해소)을 위해 수당을 지급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16,800	19,800	18,000	1,800	3,000	
국비		0			0	
도비	16,800	19,800	18,000	1,800	3,00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800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경정(19,800,000원)-기정(18,000,000원)	= 1,800	

□ 예산요구 사유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노인일자리 종사자 2인(30명 → 32명) 및 GS편의점 관리자 1인(신규) 증원으로 인한 증액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12. :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매월)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3개소(대한노인회, 북부복지관, 시니어클럽) 종사자 26명 지원
2023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3개소(대한노인회, 북부복지관, 시니어클럽) 종사자 28명 지원
2024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4개소(대한노인회, 북부복지관,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33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5,000	14,450	-	550	
2023	16,800	15,800	-	1,000	
2024	18,000	1,450	-	16,55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남혜진	담당자	복지8급 박주연	전화	2206
-----	--------	------------	-----	----------	----	------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자체)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양곡2로 30번길 30(양곡문화체육센터)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김포시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량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필요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노인복지법	제23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 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0	30,000	0	30,000	3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0,000		30,000	30,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자체)	402-03 민간위탁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머신 : 18,700,000원*1개 = 18,700 · 냉장·냉동고 : 2,940,000원*1개 = 2,940 · 그라인더 : 858,300원*1개 = 859 · 자동탐핑기 : 1,600,000원*1개 = 1,600 · 제빙기 : 1,605,000원*1개 = 1,605 · 정수기 : 1,050,000원*1개 = 1,050 · 기타 물품 : 3,246,700원 = 3,246 		

□ 예산요구 사유

- 카페 인연 3호점 개소를 통한 신규 시장형 노인일자리 창출

□ 예산증감 사유

- 카페 '인연' 운영 물품 구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반영	-
일자	-	-	-	-	-	-	-	-	2019.10.17.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3. : 물품 구입
- 2024.04. : 휴게음식점(카페) 신고 및 「카페 인연 3호점」 개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 해당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남혜진	담당자	복지8급 박주연	전화	2206
-----	--------	------------	-----	----------	----	------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사우중로 74번길 48 / 통진읍 마송1로 16번길 40-2
사업규모	경로식당 취사원 5명		
사업목적	경로식당 운영을 위한 취사원 인건비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89,400	111,000	107,400	3,600	21,600	
국비		0			0	
도비	8,940	11,100	10,740	360	2,160	
시비	80,460	99,900	96,660	3,240	19,44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600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인건비 : 경정(111,000,000원)-기정(107,400,000원)	= 3,600	

□ 예산요구 사유

-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노인복지관 2개소)

□ 예산증감 사유

- 취사원 인건비 지급 시 기존 정부 최저시급('23년 9,620원)에서 경기도 생활임금('24년 11,890원) 적용으로 기준 변경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증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12. : 보조금 교부(분기별)
- 2024.01.~12. : 취사원 인건비 지급(매월)
- 2024.12. : 보조금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경로식당 취사원 5명 인건비 지급
2023	- 경로식당 취사원 5명 인건비 지급
2024	- 경로식당 취사원 5명 인건비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68,160	48,563	-	19,596	
2023	89,400	78,828	-	10,572	
2024	107,400	27,390	-	80,010	2.13.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남혜진	담당자	복지7급 김성진	전화	2205
-----	--------	------------	-----	----------	----	------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468명		
사업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수급권자들의 의료수가를 지원(대납)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서비스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7,369,967	7,648,900	9,724,297	-2,075,397	278,933	
국비	0	0	0	0	0	
도비	736,997	764,890	972,430	-207,540	27,893	
시비	6,632,970	6,884,010	8,751,867	-1,867,857	251,040	
기타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75,397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경정(1,361,983원*468명*12월)-기정(1,361,983원*595명*12월) =	-2,075,397	

□ 예산요구 사유

-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재가 방문 또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통한 노후 생활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리 운영비 전액에 대한 부담금 지출

□ 예산증감 사유

- 지급대상자 감소(595명 → 468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2024.12 : 사업비 집행(분기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월평균 422명, 총 6,412,228천원 지원
2023	월평균 476명, 총 7,369,967천원 지원
2024	월평균 468명, 총 2,549,634천원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6,412,228	6,412,228	-	0	
2023	7,369,967	7,369,967	-	0	
2024	9,724,297	2,549,634	-	7,174,663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담당자	복지9급 이준호	전화	5563
-----	--------	------------	-----	----------	----	------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303명		
사업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수급권자들의 의료수가를 지원(대납)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서비스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9,147,592	9,564,000	10,652,322	-1,088,322	416,408	
국비	0	0	0	0	0	
도비	4,573,796	4,782,000	5,326,161	-544,161	208,204	
시비	4,573,796	4,782,000	5,326,161	-544,161	208,204	
기타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88,322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경정(2,630,363원*303명*12월)-기정(2,630,363원*338명*12월) =	-1,088,322	

□ 예산요구 사유

- 요양시설에 입소한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노인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생활 안정과 가족 생계의 부담 경감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리 운영비 전액에 대한 부담금 지출

□ 예산증감 사유

- 지급대상자 감소(338명 → 303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2024.12 : 사업비 집행(분기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월평균 310명, 총8,015,982천원
2023	월평균 345명, 총9,147,592천원
2024	월평균 303명, 총2,410,0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8,015,982	8,015,982	-	0	
2023	9,147,592	9,147,592	-	0	
2024	10,652,322	2,410,000	-	8,242,322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담당자	복지9급 이준호	전화	5563
-----	--------	------------	-----	----------	----	------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노인장기요양기관 5개소		
사업목적	감염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환기시설 설비를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2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해당조례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제2호
		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68,736	21,480	20,047	1,433	-47,256	
국비	34,368	10,740	10,024	716	-23,628	
도비	24,058	7,518	7,016	502	-16,540	
시비	10,310	3,222	3,007	215	-7,088	
기타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33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경정(21,480,000원)-기정(20,047,000원)	= 1,433	

□ 예산요구 사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감염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환기시설 설치 지원(3년 연차별 지원, 2023년~2025년)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변경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환기시설 설치 지원대상 수요조사
- 2024. 2. : 추진계획 수립
- 2024. 2. ~ 2024. 10. : 사업집행 및 보조금 지급
- 2024. 11. ~ 12. : 사업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해당없음
2023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공동생활가정) 환기시설 : 57,840,000원(5개소) ·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환기시설 : 7,160,000원(3개소)
2024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	-	-	-	
2023	68,736	65,000	-	3,736	
2024	20,047	-	-	20,047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담당자	복지9급 최민서	전화	2228
-----	--------	------------	-----	----------	----	------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명		
사업목적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이후 언어 및 청능 기능의 향상을 위한 재활지원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6,000	3,000	6,000	-3,000	-3,000	
국비		0			0	
도비	1,800	900	1,800	-900	-900	
시비	4,200	2,100	4,200	-2,100	-2,1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경정(3,000,000원)-기정(6,000,000원)	=	-3,000

□ 예산요구 사유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이후 재활치료에 필요한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지속적인 언어·청능 기능의 향상 및 회복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지급대상자 1명 감소(2명→1명)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12. : 사업비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대상자 : 1명
2023	- 대상자 : 2명
2024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3,000	3,000	-	0	
2023	6,000	6,000	-	0	
2024	6,000	0	-	6,0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인우영	담당자	행정9급 이은수	전화	5656
-----	--------	-------------	-----	----------	----	------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27명		
사업목적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189,370	119,112	126,870	-7,758	-70,258	
국비	151,496	95,289	101,496	-6,207	-56,207	
도비	26,512	16,676	17,762	-1,086	-9,836	
시비	11,362	7,147	7,612	-465	-4,215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758	
장애인의료비 지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경정(119,112,000원)-기정(126,870,000원)	=	-7,758

□ 예산요구 사유

- 의료급여 2종인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를 지원하여 적절한 의료권을 보장하고 의료비용 부담 절감을 통해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변경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12. : 사업비 예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 - 수급인원 385명(의료급여2종 157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228명)
2023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 - 수급인원 389명(의료급여2종 179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210명)
2024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 - 수급인원 398명(의료급여2종 155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243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28,195	128,195	-	0	
2023	189,370	189,370	-	0	
2024	126,870	29,778	-	97,092	2.13.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인우영	담당자	행정9급 이은수	전화	5656
-----	--------	-------------	-----	----------	----	------

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53대		
사업목적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 안전대책 마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2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5,860	5,310	5,160	150	-550	
국비	2,930	2,655	2,580	75	-275	
도비	0	0	0	0	0	
시비	2,930	2,655	2,580	75	-275	
기타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경정(5,310,000원)-기정(5,160,000원)	= 150	

□ 예산요구 사유

-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

□ 예산증감 사유

- 국비 변경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12. : 사업비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10대 운영 지원
2023	- 53대 운영 지원
2024	- 43대 운영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200	1,200	-	0	
2023	5,860	5,860	-	0	
2024	5,160	1,290	-	3,87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인우영	담당자	복지8급 김효정	전화	2211
-----	--------	-------------	-----	----------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66명		
사업목적	성인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기반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에 도움을 줌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위임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 지원을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1,870,310	1,733,987	1,891,622	-157,635	-136,323	
국비	1,309,217	1,213,791	1,324,135	-110,344	-95,426	
도비	84,164	78,029	85,123	-7,094	-6,135	
시비	476,929	442,167	482,364	-40,197	-34,762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7,63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경정(1,733,987,000원) - 기정(1,891,622,000원)	-157,635	

□ 예산요구 사유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성인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 바우처 확장형 (월 176시간) 및 기본형(월 132시간)의 평균 시간인 154시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이용자 수(72명 → 66명)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12. : 사업비 예탁, 대상자 선정 및 사업진행현황 모니터링
 - * 2024.01~03. : 상반기 제공기관 지도·점검
 - * 2024.08~10. : 하반기 제공기관 지도·점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이용자 : 45명
2023	- 이용자 : 60명
2024	- 이용자 : 66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087,800	1,087,800	-	0	
2023	1,870,310	1,870,310	-	0	
2024	1,891,622	346,797	-	1,544,825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인우영	담당자	복지9급 오현진	전화	2213
-----	--------	-------------	-----	----------	----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IOT, AI활용 돌봄사업 운영비)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통신프란치스코집(통신읍 김포대로 2398-68)
사업규모	장애인거주시설 1개소		
사업목적	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의 효율적 확대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0	480	1,000	-520	480	
국비		336	700	-364	336	
도비		22	45	-23	22	
시비		122	255	-133	122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2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IOT, AI활용 돌봄사업 운영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통신비 : 경정(480,000원)-기정(1,000,000원)	= -520	

□ 예산요구 사유

- 입소자에 대한 돌봄 공백 발생 대응을 위한 IOT, AI 활용한 비대면 돌봄서비스 사업

□ 예산증감 사유

- 대당 통신비 감소 (1대 약13,000원 → 6,500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 2024. 1. ~ 2024.12. : 운영 및 보조금 교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2023					
2024	1,000	-	-	1,0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이에스터	담당자	복지8급 박희연	전화	2218
-----	--------	--------------	-----	----------	----	------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김포한강3로 291(장기동)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상담 및 교육·재활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로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70,000	70,000	60,000	10,000	0	
국비		0			0	
도비	70,000	70,000	60,000	10,000	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인건비 : 경정(17,500,000원*4분기)-기정(15,000,000원*4분기)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도비지원금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동의	
일자	2023.11.								2023. 9.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 2024. 1.~12. : 민간위탁금 교부 및 운영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70,000천원 지원
2023	·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70,000천원 지원
2024	·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1분기 15,000천원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70,000	70,000		0	
2023	70,000	70,000		0	
2024	60,000	15,000		45,0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이에스더	담당자	복지7급 박환섭	전화	2216
-----	--------	--------------	-----	----------	----	------

인력운영비(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노인장애인과
사업규모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담당자 1명(공무직)		
사업목적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인력 명절수당 지급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노인복지법		제23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당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5,334	2,787	3,102	-315	-2,547	
국비	2,667	1,394	1,551	-157	-1,273	
도비	400	209	233	-24	-191	
시비	2,267	1,184	1,318	-134	-1,083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15	
인력운영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 경정(2,787,000원)-기정(3,102,000원)	= -315	

□ 예산요구 사유

-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공무직) 수당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4년 노인일자리 담당자 고용부담금 및 제수당 지급개선안'에 따라 감액조정된 공무직 사회보험료(315,000원)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으로 이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12. :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담당자(공무직) 수당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2023	-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담당자 1명 사회보험료 3,126천원 지급
2024	-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담당자 1명 사회보험료 204천원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	-	-	-	
2023	5,334	3,126	-	2,208	
2024	3,102	204	-	2,898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남혜진	담당자	복지8급 박주연	전화	2206
-----	--------	------------	-----	----------	----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가족문화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국비 운영비)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비공개시설
사업규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사업목적	가정폭력피해자와 동반가족 보호 및 지원으로 자립과 사회적응에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221,064	230,279	232,419	-2,140	9,215	
국비	154,745	161,196	162,694	-1,498	6,451	
도비	33,159	34,542	34,863	-321	1,383	
시비	33,160	34,541	34,862	-321	1,381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140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국비 운영비)	307-05 민간위탁금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1개소) : 경정(230,279,000원) - 기정(232,419,000원) = -2,140,000원	= -2,140	

□ 예산요구 사유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여성가족부 인건비 감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내시 금액 조정
- 道 2024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경기도 여성정책과-173('24.1.4.)]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일자	2023.11.	-	-	-	-	-	-	-	2023.12.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12.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분기별 지급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종사자 6인 인건비 및 운영비) - 입소인원 : 9명(피해자 7명, 동반아동 2명) / 퇴소인원 : 14명(피해자 9명, 동반아동 5명) / 평균보호인원 : 9.7명
2023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종사자 6인 인건비 및 운영비) - 입소인원 : 18명(피해자 16명, 동반아동 2명) / 퇴소인원 : 14명(피해자 11명, 동반아동 3명) / 평균보호인원 : 9명
2024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종사자 6인 인건비 및 운영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212,245	212,245	-	-	
2023	221,064	221,064	-	-	
2024	232,419	57,536	-	174,883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장 주세자	담당자	행정7급 유진영	전화	5584
-----	-------	------------	-----	----------	----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돌문로 114, 3층
사업규모	김포성폭력상담소 1개소		
사업목적	성폭력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5,333	3,000	0	3,000	-2,333	
국비	3,733	2,077	0	2,077	-1,656	
도비	800	462	0	462	-338	
시비	800	461	0	461	-339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집단상담 8회 = 3,000,000원	= 3,000	

□ 예산요구 사유

○ 집단상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상처를 회복하여 일상생활로의 복귀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2월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확정 내시 반영
[경기도 여성정책과-2261(2024.2.2.)]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2.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 수행기관 선정(김포성폭력상담소)
- 2024. 4. ~ 12.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개별상담 : 9회 (3명) - 집단상담 : 16회 (14명) (타로, 여성주의 의식함양, 청소년 성교육) - 기타상담 : 1회 (5명) (청소년 체험 성교육)
2023	- 개별상담 : 3회 (3명) - 집단상담 : 16회 (13명) (부모상담, 타로상담, 여성주의 집단상담) - 기타상담 : 1회 (5명) (청소년 체험 성교육)
2024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5,732	5,732	-	-	
2023	5,333	5,333	-	-	
2024	0	0	-	-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장 주세자	담당자	행정7급 유진영	전화	5584
-----	-------	------------	-----	----------	----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인건비차액)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5명		
사업목적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8,008	242,416	209,551	32,865	234,408	
국비	-	0	-	-	0	
도비	4,004	72,726	62,866	9,860	68,722	
시비	4,004	169,690	146,685	23,005	165,686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2,865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인건비차액)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원 1인 인건비 지원 : 32,865,000원	= 32,865	

□ 예산요구 사유

- '24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사업조정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인건비가 당초 5인에서 4인으로 감액되어 교부됨에 따라 그 차액을 지원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道 2024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자체지원) 확정 내시 반영[경기도 여성정책과 -259(2024.1.5.)]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12. :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인건비차액 분기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관내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인건비차액 지원
2023	- 관내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인건비차액 지원
2024	- 관내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인건비차액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25,172	25,172	-	-	
2023	8,008	8,008	-	-	
2024	209,551	23,514	-	186,037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장 주세자	담당자	행정7급 유진영	전화	5584
-----	-------	------------	-----	----------	----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통진 청소년문화의집
사업규모	저소득층 포함 청소년 40명(초등 4-5학년 각 20명)		
사업목적	지역차원의 공적서비스 확대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방과후 삶의 질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제1항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203,922	202,872	202,602	270	-1,050	
국비	101,961	101,436	101,301	135	-525	
도비	50,980	50,718	50,650	68	-262	
시비	50,981	50,718	50,651	67	-26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70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인건비 (사업 지침에 따른 산출 비율 변경) - 경정(95,359,000원)-기정(95,878,000원) · 일반 운영비 (체험활동비,급식비,귀가차량 등) - 경정(107,513,000원)-기정(106,724,000원)	=	-519
			=	789

□ 예산요구 사유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 예산증감 사유

- 여성가족부 운영비 지원 기본 단가 변경에 따른 증액
※ (가내시)194,114천원 → (확정내시)194,384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1. : 연간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급
- 2024. 01. ~ 12. : 사업 집행
- 2024. 06. : 사업 집행 점검
- 2024.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운영기간 : 2022년 연중 - 주요사업 : 교과학습, 전문체험, 자기개발, 특성화사업, 공모사업, 생활지원 등 - 참여인원 : 40명(4학년 22명, 5학년 18명)
2023	- 운영기간 : 2023년 연중 - 주요사업 : 교과학습, 전문체험, 자기개발, 특성화사업, 청소년수련활동인증사업, 생활지원 등 - 참여인원 : 40명(4학년 20명, 5학년 20명)
2024	- 운영기간 : 2024년 연중 - 주요사업 : 교과학습, 전문체험, 자기개발, 디지털활동, 특성화사업, 청소년수련활동인증사업, 생활지원 등 - 참여인원 : 23명(4학년 6명, 5학년 17명) ※ 상시모집 통해 결원 충원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87,592	181,284	0	6,308	
2023	203,922	202,908	0	1,014	
2024	202,602	60,000	0	142,602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청소년팀장 최선미	담당자	행정9급 심지영	전화	2596
-----	-------	-----------	-----	----------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 11세 ~ 18세 여성청소년 20,015명		
사업목적	모든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
	위임규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 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3,140,592	2,497,872	2,474,472	23,400	-642,720	
국비	0	0	0	0	0	
도비	942,178	749,362	742,342	7,020	-192,816	
시비	2,198,414	1,748,510	1,732,130	16,380	-449,904	
기타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3,40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생리용품 구입 지역화폐 지원 : 경정(2,497,872천원)-기정(2,474,472천원) = 23,400		

□ 예산요구 사유

- 모든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김포시에 주소를 둔 11세 ~ 18세 여성청소년(2024년 기준 2006.01.01.~2013.12.31.출생자)
 - ※ 여성가족부 사업(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수혜자 제외
 - 지원금액 : 연 156,000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확정내시 예산액 반영[경기도 청소년과-118(2024.01.03.)호]
 - 대상인원 19,827명→20,015명으로 변경
 - ※ 예산액 산출 방법: 월13,000원*(대상인원*80%)*12월
- 대상인원 확대
 - (기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청소년
 - + (신설) 관내 체류등록 외국인 및 관내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여성청소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3. : 조례 개정 예정
 - 2024.03. ~ : 신청 접수(상반기 3월, 하반기 7월)
 - 2024.05. ~ : 대상자 검증 및 지역화폐 지급(상반기 5월, 하반기 9월)
 - 2024.12. : 사업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여성청소년 15,492명 지원(1~6월 : 월 12,000원 / 7~12월 : 월 13,000원)
2023	여성청소년 16,159명 지원(월 13,000원, 최대 연 156,000원)
2024	여성청소년 20,015명 지원 예정(월 13,000원, 최대 연 156,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2,776,320	2,065,588	-	710,732	
2023	3,140,592	2,600,000	-	540,592	
2024	2,474,472	-	-	2,474,472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청소년팀장 최선미	담당자	행정8급 이성인	전화	2989
-----	-------	-----------	-----	----------	----	------

(재)청소년재단 운영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걸포로 76(중봉청소년수련관 등)
사업규모	중봉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4개소, 진로상담본부, 청소년수련원 등		
사업목적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 제2항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10,302,419	9,266,046	9,256,864	9,182	-1,036,373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302,419	9,266,046	9,256,864	9,182	-1,036,37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182	
(재)청소년재단 운영	306-01 출연금	· 사무국 경정(6,705,002,000원)-기정(6,695,820,000원) - 시간외근무수당 : 426,409,200원*1.5/209시간*3시간	= 9,182	

□ 예산요구 사유

- 청소년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재단 목적사업 수행
 -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청소년 진로지원에 관한 사업, 시민·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의 추진

□ 예산증감 사유

- 코로나19 이후 수련활동 프로그램 및 사계절별매장 운영 활성화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확보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의결
일자	2023.11.	-	-	-	-	-	-	-	-	2023.1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12. : 분기별 출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청소년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2023	청소년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2024	청소년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9,286,072	8,325,717	-	960,355	
2023	10,302,419	10,302,419	-	305,749	
2024	9,256,864	2,834,090	-	6,422,774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청소년팀장 최선미	담당자	행정7급 전지현	전화	2595
-----	-------	-----------	-----	----------	----	------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중봉청소년수련관, 김포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4개소)
사업규모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6개소		
사업목적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활성화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위임규정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137,040	167,304	140,640	26,664	30,264	
국비	68,520	83,652	70,320	13,332	15,132	
도비		0			0	
시비	68,520	83,652	70,320	13,332	15,13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6,664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308-1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인건비 - 경정(27,884,000*6명)-기정(28,128,000*5명)	= 26,664	

□ 예산요구 사유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청소년지도사 배치

□ 예산증감 사유

- 기본급(최저임금 및 공통처우)인상분 반영 및 기존 지원시설 5개소에서 6개소로 증액
 - 기존 지원시설: 5개소(중봉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4개소) → 김포시 청소년수련원 추가
 - ※ '24년 사업 수요조사시 6개소로 신청하였으나, 가내시에 이 부분 미반영되어 확정내시 통해 수정 반영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1. : 연간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급
- 2024. 01. ~ 12. : 사업 집행
- 2024. 06. : 사업 집행 점검
- 2024.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대 상 : 청소년 배치지도사 5명
2023	- 대 상 : 청소년 배치지도사 5명
2024	- 대 상 : 청소년 배치지도사 6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57,680	131,319	0	26,361	
2023	137,040	129,933	0	7,107	
2024	140,640	37,854	0	102,786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청소년팀장 최선미	담당자	행정9급 심지영	전화	2596
-----	-------	-----------	-----	----------	----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걸포로 7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규모	청소년동반자 인건비(전일제 6명, 시간제 7명), 사업 운영비		
사업목적	위기 청소년의 활동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심리·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267,096	279,762	279,322	440	12,666	
국비	133,548	139,881	139,661	220	6,333	
도비	20,032	20,982	20,949	33	950	
시비	113,516	118,899	118,712	187	5,38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4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활동비 : 경정(256,075,000원)-기정(254,102,000원) · 사례진행비 및 운영비 : 경정(23,687,000원)-기정(25,220,000원) = - 국비 지원단가 조정에 따른 활동비 및 운영비 등 조정	440	

□ 예산요구 사유

- 전문상담사 활용을 통한 위기청소년 찾아가는 상담지원 및 다양한 연계서비스 제공
- 최근 3개년 고위기청소년 사례비율 지속적 증가에 따라 전문상담사를 투입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집중지원 (매년 여가부 지정 목표 수립에 따른 전문상담사 운영)

□ 예산증감 사유

- 국비 지원단가 조정(전일제 16,271천원 → 16,296천원, 시간제 6,005천원 → 6,015천원)에 따른 활동비 및 사례진행비, 운영비 예산 조정
- 경기도 '2024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확정내시' 반영[경기도 청소년과-23036(2023.12.29.)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2024년 연간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급
- 2024.01. ~ 12. : 사업집행
- 2024.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운영기간 : 2022.1월~12월 - 대상 : 9세~24세 위기(가능)청소년 - 내용 : 찾아가는 청소년상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심리검사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457사례, 지원서비스 14,426건(목표 456 대비 100% 달성)
2023	- 운영기간 : 2023.1월~12월 - 대상 : 9세~24세 위기(가능)청소년 - 내용 : 찾아가는 청소년상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심리검사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456사례, 지원서비스 10,698건(목표 456 대비 100% 달성)
2024	- 운영기간 : 2024.1월~12월 - 대상 : 9세~24세 위기(가능)청소년 - 내용 : 찾아가는 청소년상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심리검사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122사례, 지원서비스 905건(목표 456 대비 27% 달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262,836	262,836	-	48,505	
2023	267,096	210,227	-	56,869	
2024	279,322	69,831	-	209,491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청소년팀장 최선미	담당자	행정7급 전지현	전화	2595
-----	-------	-----------	-----	----------	----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걸포로 76(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규모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7명		
사업목적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한다. 1. 청소년지도자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4,200	4,200	4,800	-600	0	
국비		0			0	
도비	4,200	4,200	4,800	-60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 경정(50,000원*7명*12월)-기정(50,000원*8명*12월)	= -600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시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정내시 반영[경기도 청소년과-554(2024.01.09.)호]
-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도 예산편성 수요조사(8명 처우개선비)가 미반영되어 작년 수준(7명)으로 확정내시
- 경기도 확정내시 예산액 반영[경기도 청소년과-554(2024.01.09.)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1. ~ 12. : 매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8명 지원
20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6명 지원
202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6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4,800	3,950	-	850	
2023	4,200	3,750	-	450	
2024	4,800	300	-	4,5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청소년팀장 최선미	담당자	행정8급 이성인	전화	2989
-----	-------	-----------	-----	----------	----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걸포로 76(청소년이동쉼터)
사업규모	사무실 1개소, 45인승 버스 개조 운영		
사업목적	가출(징후)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통한 가정·학교·사회 복귀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357,770	369,669	369,069	600	11,899	
국비	166,544	171,960	171,660	300	5,416	
도비	24,982	25,749	25,749		767	
시비	166,244	171,960	171,660	300	5,716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운영비 : 경정(29,754,000원)-기정(29,154,000원) - 난방비 2개월 분 반영 : 300,000원*2월	= 600	

□ 예산요구 사유

-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연계를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1~2월 한파대비 난방비 2개월분 600천원 일시지원으로 쾌적한 시설 운영
- 경기도 '2024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확정내시' 반영[경기도 청소년과-294(2024.01.05.)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1. : 2024년 연간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급
- 2024. 01. ~ 12. : 사업집행
- 2024.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운영실적 : 77,005건(명) - 세부추진사항 : 위기청소년지원사업(50,837건), 자원연계지원사업(16,603명), 기타(9,565명)
2023	- 운영실적 : 77,638건(명) - 세부추진사항 : 현장지원사업(27,612명), 예방사업(1,829명), 지역연계사업(48,197명)
2024	- 운영실적 : 372건(명) - 세부추진사항 : 현장지원사업(230명), 지역연계사업(142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345,971	345,971	-	36,304	
2023	357,770	285,865	-	71,905	
2024	369,069	121,800	-	247,269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청소년팀장 최선미	담당자	행정7급 전지현	전화	2595
-----	-------	-----------	-----	----------	----	------

가족센터 차량 운용 지원

사업기간	2024. 4.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한강4로 564(구래동, LH한가람2단지 내)
사업규모	승용차량 1대		
사업목적	차량 기동력 확보 및 운용 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취약위기가구 생활지원 등 찾아가는 가족서비스 제공의 효율적 수행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12조
해당조례	시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0	7,200	0	7,200	7,200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7,200		7,200	7,200	
기타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200	
가족센터 차량 운용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차량임차료 : 600,000원 × 1대 × 8월 = 4,800,000원 · 차량 연료 구입비 : 300,000원 × 1대 × 8월 = 2,400,000원	= 7,200	

□ 예산요구 사유

○ 필요성 : 서비스 수요 대비 가용 차량 부족

- 월곶, 대곶, 통진, 하성, 고촌 등 구래동(가족센터)에서 멀고 넓은 출장 범위와, 잦은 출장과 업무량

▶ 차량 보유 및 운용 현황

연번	차종	연식	배기량	승차정원	현재 사용 용도	총 운행거리	지원단체
1	모닝	2011년	1,000CC	5	사례관리 가구 후원품 전달 및 배분	71,205km	김포시청 소유

- 일 평균 차량 운행량 ▶ 48km/차량 1대 *2023년 기준, 248일(공휴일 제외)

- 사례관리 업무 : 주 3회 이상, 후원 물품 관리 대상 가정 방문 및 배부 포함

○ 차량운용 계획

수행 사업명	운행시간	경유/목적지	수행인원	운행거리	연간 운행거리	비고
운행거리 → 평균 48 km / 일					12,000 km	
아동식사지원사업	13:00 ~18:00	관내 전역	4명	80km/일	월8회 × 12월 = 7,680km/연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식사 지원 ▶ 김포아이사랑센터 반찬지원 외
사례관리 가정방문 및 후원물품배분	14:00 ~18:00	관내 전역	2명	60km/일	월6회 × 12월 = 4,320km/연	

□ 예산증감 사유

- 현재 가족센터 보유 차량으로는 물품 배부 및 가정방문 등 현안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로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事成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일자	2023.11.	-	-	-	-	-	-	-	2023.07.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8. : 정수물품 배정 승인
 - 2024.04. : 예산 확보 및 차량 임차계약
 - 2024.04. ~ 2024.12. : 차량 운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상호문화팀장 황경애	담당자	행정7급 김완병	전화	5604
-----	-------	------------	-----	----------	----	------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운양환승센터 A동 지상1층(136m ²)
사업규모	1개소, 사업량 1,000마리, 보조인력 1명		
사업목적	시 직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 진료비 부담 완화 및 반려동물 복지 실현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16조 제1항
	제16조(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반려동물 대상으로 기초검진 및 동물입양 교육·상담 등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반려동물 보건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0	525,272	503,128	22,144	525,272	
국비					0	
도비					0	
시비		525,272	503,128	22,144	525,272	
기타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144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본급 : 11,210원*7시간*1명*167일(8개월)	=	13,105
		· 시간외근무수당 : 16,815원*3시간*1명*36일(8개월, 주1회)	=	1,817
		· 유급휴일수당 : 11,210원*7시간*1명*51일	=	4,002
		· 명절휴가수당 : 500,000원*1명	=	500
		· 4대보험료 : 19,424,000원*14%	=	2,720

□ 예산요구 사유

-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운영시 진료보조인력 1명 필요
 - 적정수준의 진료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의사 1인과 수의 테크니션(동물병원 간호사) 1~2인이 필요
 -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약물 도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소지자(농림축산식품부 발급) 채용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8. : 공공진료센터 장소 협의 및 확보
- 2024.01. ~ 03. :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
- 2024.04. ~ 05. : 리모델링 공사 및 의료기구 물품 구입·배치
- 2024.상반기 : 개소 및 운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장 유난영	담당자	행정7급 이해진	전화	5557
-----	-------	------------	-----	----------	----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아동보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본소) 김포시 김포한강1로 77-39 (통진분소)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7 (풍무분소) 김포시 풍무동 888
사업규모	3개소(본소1, 통진분소1, 풍무분소1)		
사업목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보조를 통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육아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법령 위임규정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해당조례	김포시 보육 조례	제29조 제4호
		제2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966,237	1,285,746	1,182,421	103,325	319,509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66,237	1,285,746	1,182,421	103,325	319,50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3,325	
	307-05 민간위탁금	소 계	90,425	
		· 육아종합지원센터(풍무 분소) 운영비 =	90,425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405-01 자산취득비	소 계	12,900	
		· 사무용 컴퓨터 : 경정(1,400천원*7개)-기정(1,400천원*4개) =	4,200	
		· 장난감 소독기 : 경정(5,000천원*2개)-기정(5,000천원*1개) =	5,000	
		· 세탁기/건조기 : 경정(850천원*4개)-기정(850천원*2개) =	1,700	
		· 청소기 : 경정(1,000천원*5개)-기정(1,000천원*3개) =	2,000	
		아래 별첨 세부내역 자료 참고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어린이집과 연계체계 구축으로 원 운영의 효율성을 지원하며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으로 지역사회 발전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육아종합지원센터 풍무 분소 설치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및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반영

※ 2024년 제1회 추경 요구 예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과 목			2024년 제1회 추경		
	관	항	목			
세출 합계				103,325		
품무 분소 운영비 (민간위탁금)	합계 (품무분소 운영비)			90,425		
	사무비	합계 (사무비)			52,050	
		인건비	소계		45,985	
			급여 (총 3명)		32,148	
			기본급	보육전문4호 (1명)		10,422
				운영요원1호 (2명)		21,726
			제수당 및 기타경비		13,837	
		운영비	수용비 및 기타운영비		6,065	
	사업비	합계 (사업비)			38,375	
		가정양육지원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36,250	
지역사회 연계 및 정보		홍보, 홈페이지 관리 등		2,125		
자산 취득비	합계 (자산취득비)			12,900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900		

※ 필요물품(자산취득) 목록

단위: 천원)

연번	이미지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12,900	
1		사무용 컴퓨터	일체형컴퓨터, 대우루컴즈, DA261-218210-QW, Intel Core i3 12100(3.3GHz), 60.4cm	개	3	1,400	4,200	품무 분소
2		장난감 소독기	1000*500*1800 / 650L	개	1	5,000	5,000	
3		세탁기/건조기	가정용세탁기, (CN)F12VVA, 세탁12kg 세탁물건조기, HGXG170-KSK, 17kg	개	2	850	1,700	
4		청소기	진공청소기, VS28C973ESG, 1.2kW	개	2	1,000	2,000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반영	-
일자	2023.11.	-	-	-	-	-	-	-	2023.2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11~12. : 통진 분소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계약체결 및 착공
- 2024. 3.~4. : 풍무 분소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계약체결 및 착공
- 2024. 6.~7. : 통진 분소 준공 및 개관
- 2024. 7.~8. : 풍무 분소 준공 및 개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어린이집지원사업 : 보육교직원교육 1,420명, 보육컨설팅 273회 - 가정양육지원사업 : 장난감도서관 17,241건, 안전문화체험관 3,830명, 프로그램실 4,102명, 어린이소공연장 2,841명, 아이사랑놀이터 5,761명
2023	- 어린이집지원사업 : 보육교직원교육 1,252명, 보육컨설팅 222회 - 가정양육지원사업 : 장난감도서관 15,458건, 안전문화체험관 5,025명, 프로그램실 5,693명, 어린이소공연장 3,201명, 아이사랑놀이터 6,199명
2024	- 어린이집지원사업 : 보육컨설팅 23회 - 가정양육지원사업 : 장난감도서관 2,100건, 안전문화체험관 444명, 프로그램실 71명, 아이사랑놀이터 908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930,596	888,085	-	42,511	
2023	966,237	942,810	-	23,427	
2024	1,182,421	244,742	-	937,679	2.13.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아동보육과	사업규모	198.35㎡(약 60평)	1회추경 예산요구액 (천원)	103,325
부기명 (세부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풍무 분소) 운영비	사업위치	풍무동 888 (파크트루엘 2층 일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장 권미진	담당자	행정7급 조왕희	전화	5323
-----	-------	------------	-----	----------	----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인건비)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715명		
사업목적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덜고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여 보육의 항상성 유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9,080,000	9,674,000	9,531,000	143,000	594,000	
국비	5,448,000	5,804,400	5,718,600	85,800	356,400	
도비	2,542,400	2,708,720	2,668,680	40,040	166,320	
시비	1,089,600	1,160,880	1,143,720	17,160	71,28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3,000	
보조교사 인건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인건비 : 경정(806,166,660원*12월)-기정(794,250,000원*12월) =	143,000	

□ 예산요구 사유

-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서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사업량: 705명 → 715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2024. 12.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보조교사 : 월 평균 336명, 1,081천원/인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월 평균 271명, 1,081천원/인 지원
2023	- 보조교사 : 월 평균 354명, 1,099천원/인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월 평균 310명, 1,099천원/인 지원
2024	- 보조교사 : 월 평균 360명, 1,128천원/인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월 평균 335명, 1,128천원/인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8,924,736	8,109,746	-	814,990	
2023	9,080,000	9,042,444	-	37,556	
2024	9,531,000	791,616	-	8,739,384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현정	전화	5327
-----	-------	------------	-----	------------	----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99명		
사업목적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203,400	179,000	188,000	-9,000	-24,400	
국비	122,040	107,400	112,800	-5,400	-14,640	
도비	56,952	50,120	52,640	-2,520	-6,832	
시비	24,408	21,480	22,560	-1,080	-2,92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000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수당 : 경정(75,000원*199명*12개월)-기정(75,000원*209명*12개월)	=	-9,000

□ 예산요구 사유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교사겸직원장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209명 → 199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2024.01. ~ 2024.12.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월평균)
		교사겸직원장	월 75,000원
연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월평균)
		교사겸직원장	월 75,000원
연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월평균)
		교사겸직원장	월 75,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236,200	211,125	-	25,075	
2023	203,400	183,000	-	20,400	
2024	188,000	14,775	-	173,225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화영	전화	5325
-----	-------	------------	-----	------------	----	------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250명		
사업목적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율을 높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25,000	24,452	24,795	-343	-548	
국비	15,000	14,671	14,877	-206	-329	
도비	7,000	6,847	6,943	-96	-153	
시비	3,000	2,934	2,975	-41	-6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43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교육비 : 경정(약 97,810원*250명)-기정(약 99,180원*250명)	= -343	

□ 예산요구 사유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승급 및 직무교육) 비용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 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직무교육비 80,000원/인, 승급교육비 140,000원/인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서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0 ~ 2024. 12 : 보수교육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구분	지원금액	지원인원
	2022	총계	
직무교육비		80천원/인	72
승급교육비		140천원/인	92
2023	구분	지원금액	지원인원
	총계		153
	직무교육비	80천원/인	55
	승급교육비	140천원/인	98
2024	구분	지원금액	지원인원
	총계		-
	직무교육비	80천원/인	-
	승급교육비	140천원/인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32,000	18,640	-	13,360	
2023	25,000	18,120	-	6,880	
2024	24,795	-	-	24,795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사회복지8급 박정원	전화	5329
-----	-------	------------	-----	------------	----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671대		
사업목적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렌탈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법령 위임규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209,353	220,572	202,752	17,820	11,219	
국비		0			0	
도비	62,806	66,172	60,826	5,346	3,366	
시비	146,547	154,400	141,926	12,474	7,85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820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렌탈비 : 경정(11,000원*1,671대*12월) - 기정(11,000원*1,536대*12월) =	17,820	

□ 예산요구 사유

- 고농도 미세먼지 증가로 인한 어린이집 실내 공기 질 개선 필요
- 지원내용 : 보육실 및 공동놀이실 실당 공기청정기 1대 지원
 - 렌탈 : 1대당 월 11,000원
 - 유지관리 : 1대당 연 최대 130,000원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내시서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사업량: 1,536대 → 1,671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증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2024. 12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비 및 유지관리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사업명	지원개소	지원대수	비고
	2022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341개소	1,581대
연도	사업명	지원개소	지원대수	비고
	2023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358개소	1,499대
연도	사업명	지원개소	지원대수	비고
	2024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325개소	1,483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228,096	203,369	-	24,727	
2023	209,353	200,266	-	9,086	
2024	202,752	48,548	-	154,204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사회복지8급 박정원	전화	5329
-----	-------	------------	-----	------------	----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3개반(독립반), 20개반(통합반)		
사업목적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한 긴급보육 또는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개별적 보육수요에 부응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197,372	235,632	242,520	-6,888	38,260	
국비	98,686	117,816	121,260	-3,444	19,130	
도비	49,343	58,908	60,630	-1,722	9,565	
시비	49,343	58,908	60,630	-1,722	9,56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888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인건비 등 : 경정(19,636,000원*12월)-기정(20,210,000원*12월) =	-6,888	

□ 예산요구 사유

- 안정적인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서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2024. 12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독립반 4개반, 통합반 4개반 운영
2023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독립반 4개반, 통합반 5개반 운영
2024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독립반 3개반 운영, 통합반 3개반 3월중 운영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95,820	184,475	-	11,345	
2023	197,372	194,749	-	2,623	
2024	242,520	27,580	-	214,94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사회복지8급 박정원	전화	5329
-----	-------	------------	-----	------------	----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9개소		
사업목적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 인프라 구축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 제1항 제13호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596,826	614,044	606,091	7,953	17,218	
국비		0			0	
도비	525,206	540,359	533,360	6,999	15,153	
시비	71,620	73,685	72,731	954	2,06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953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운영비 : 경정(2,693,170원*19개소*12월)-기정(2,658,290원*19개소*12월) =	7,953	

□ 예산요구 사유

-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의 우수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내시서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2024. 12.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공공형 어린이집 17개소 지원
2023	- 공공형 어린이집 19개소 지원
2024	- 공공형 어린이집 19개소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453,855	448,700	-	5,155	
2023	596,826	591,890	-	4,936	
2024	606,091	55,640	-	550,451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사회복지8급 신장부	전화	5328
-----	-------	------------	-----	------------	----	------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9개소		
사업목적	공공형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법령 위임규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 제1항 제13호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176,800	194,970	196,100	-1,130	18,170	
국비		0			0	
도비	35,360	38,994	39,220	-226	3,634	
시비	141,440	155,976	156,880	-904	14,53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130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운영비 : 경정(855,130원*19개소*12월)-기정(860,080원*19개소*12월) =	-1,130	

□ 예산요구 사유

-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위생관리를 위한 조리원 인건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내시서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2024. 12. :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구 분	지원금액	지원개소
	2022	40인 미만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월 600천원/개소
	40인 이상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월 900천원/개소	4개소
연도	구 분	지원금액	지원개소
	2023	40인 미만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월 700천원/개소
	40인 이상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월 1,000천원/개소	5개소
연도	구 분	지원금액	지원개소
	2024	40인 미만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월 700천원/개소
	40인 이상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월 1,000천원/개소	5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15,200	111,900	-	3,300	
2023	176,800	163,250	-	13,550	
2024	196,100	15,100	-	181,0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사회복지8급 신장부	전화	5328
-----	-------	------------	-----	------------	----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9개소		
사업목적	공공형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운영활성화비를 지원하여 우수한 보육품질 유지 및 보육서비스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 제1항 제13호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234,900	212,890	250,000	-37,110	-22,010	
국비		0			0	
도비	46,980	42,578	50,000	-7,422	-4,402	
시비	187,920	170,312	200,000	-29,688	-17,60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7,110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운영비 : 경정(30,000원*591명*12월)-기정(30,000원*694명*12월) =	-37,110	

□ 예산요구 사유

- 공공형 어린이집의 우수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활성화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내시서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2024. 12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사업명	지원금액 / 지원인원	지원개소	비고
	2022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월 30천원 / 379명	17개소
연도	사업명	지원금액 / 지원인원	지원개소	비고
	2023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월 30천원 / 490명	19개소
연도	사업명	지원금액 / 지원인원	지원개소	비고
	2024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월 30천원 / 558명	19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36,710	133,620	-	3,090	
2023	234,900	177,270	-	57,630	
2024	250,000	16,680	-	233,32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사회복지8급 신장부	전화	5328
-----	-------	------------	-----	------------	----	------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3개소		
사업목적	맞벌이 및 취업여성의 0세아 보육 문제 해소를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법령 위임규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 제1항 제13호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1,417,536	1,442,556	1,433,162	9,394	25,020	
국비	0	0	0	0	0	
도비	283,507	288,511	286,632	1,879	5,004	
시비	1,134,029	1,154,045	1,146,530	7,515	20,01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394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추가반 인건비 : 경정(2,172,600원*38명*12월)-기정(2,152,000원*38명*12월)	9,394	

□ 예산요구 사유

- 취업 부모의 영아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 경감
- 0세아 보육의 특수성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 요구에 부응

□ 예산증감 사유

-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2024. 12. : 0세아전용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0세아전용 어린이집 13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023	- 0세아전용 어린이집 13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024	- 0세아전용 어린이집 13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301,328	1,019,548	-	281,780	
2023	1,417,536	1,312,113	-	105,423	
2024	1,433,162	121,131	-	1,312,031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화영	전화	5325
-----	-------	------------	-----	------------	----	------

어린이집 운영 지원(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7개소		
사업목적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20,858	20,160	17,246	2,914	-698	
국비	12,515	12,096	10,348	1,748	-419	
도비	5,840	5,645	4,829	816	-195	
시비	2,503	2,419	2,069	350	-8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914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운영비: 경정 (720,000원*7개소*4분기) - 가정 (616,000원*7개소*4분기) =	2,914	

□ 예산요구 사유

-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개소당 정원충족률에 따라 200~280천원 운영비 차등 지원
-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보육 아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소재 법인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보다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서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2024. 12. :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지원실적 :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7개소 운영비 지원
2023	- 지원실적 :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7개소 운영비 지원
2024	- 지원실적 :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7개소 운영비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20,760	20,670	-	90	
2023	20,858	20,858	-	178	
2024	17,246	-	-	17,246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화영	전화	5325
-----	-------	------------	-----	------------	----	------

어린이집 운영 지원(급식위생관리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57개소		
사업목적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을 제고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0	205,200	0	205,200	205,200	
국비		123,120		123,120	123,120	
도비		57,456		57,456	57,456	
시비		24,624		24,624	24,62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5,200	
급식위생관리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급식위생관리비 : 300,000원*57개소*12월	= 205,200	

□ 예산요구 사유

- 민간어린이집 급식소의 안전도 강화와 운영부담 경감을 위해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영유아 정원 및 교직원 포함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개소당 월 30만원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급식위생관리 지원 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미반영	-	-	-	-	-	-	-	-	-
일자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3 ~ 2024. 12 :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 지원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사회복지8급 박정원	전화	5329
-----	-------	------------	-----	------------	----	------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2개소		
사업목적	장애아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에 적절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법령 위임규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 제1항 제13호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2,000	6,000	4,000	2,000	4,000	
국비		0			0	
도비	400	1,200	800	400	800	
시비	1,600	4,800	3,200	1,600	3,2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교재교구비 : 경쟁(2,000,000원*1개소*1회)+(4,000,000원*1개소*1회) = - 기정(4,000,000원*1개소*1회)	2,000	

□ 예산요구 사유

- 특수보육을 실시하는 장애아보육 어린이집에 장애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교구 지원을 통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반 3개 이상 시 교재교구비 신규 지원(연 2,000천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4. :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개소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 2,000천원/년	1개소
2023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개소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 2,000천원/년	1개소
2024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2,000	2,000	-	0	
2023	2,000	2,000	-	0	
2024	4,000	-	-	4,0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화영	전화	5325
-----	-------	------------	-----	------------	----	------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801명		
사업목적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아동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4조2(양육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3,415,474	2,161,036	2,091,465	69,571	-1,254,438	
국비	2,561,605	1,620,777	1,568,599	52,178	-940,828	
도비	597,708	378,181	366,006	12,175	-219,527	
시비	256,161	162,078	156,860	5,218	-94,08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9,571	
가정양육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가정양육수당 : 경정(100,000원*1,801명*12월)-기정(100,000원*1,743명*12월) =	69,571	

□ 예산요구 사유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서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사업량: 1,743명 → 1,801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2024. 12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구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양육수당	총계
	2022	월 평균 지원인원	5,486명	2명	13명
2023	구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양육수당	총계
	월 평균 지원인원	2,301명	1명	15명	2,317명
2024	구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양육수당	총계
	월 평균 지원인원	2,297명	0명	16명	2,313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0,015,300	9,398,232	-	617,068	
2023	3,415,474	3,131,735	-	283,739	
2024	2,091,465	233,400	-	1,858,065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탁여진	담당자	사회복지8급 박정원	전화	5329
-----	-------	------------	-----	------------	----	------

어린이집 확충(리모델링)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풍무동 및 구래동
사업규모	2개소		
사업목적	저출산 극복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24조(비용의 보조)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김포시 보육조례		제29조(보조금의 지급)
해당조례	제29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454,005	295,000	80,000	215,000	-159,005	
국비	227,003	147,500	40,000	107,500	-79,503	
도비	113,501	73,750	20,000	53,750	-39,751	
시비	113,501	73,750	20,000	53,750	-39,75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15,000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401-01 시설비	·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 : 경정(295,000,000원)-기정(80,000,000원) - 사업면적 450㎡ 이상 : 145,000,000원 × 1개소 = 145,000,000원 - 사업면적 250㎡ 이하 : 70,000,000원 × 1개소 = 70,000,000원	215,000	

□ 예산요구 사유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2개소) 리모델링 지원
- 2024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량 2개소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1개소→3개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12월 : 사전적격심사 완료
- 2024. 1월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한 전환대상 선정
- 2024. 2월 : 보건복지부 승인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약
- 2024. 3~4월 : 리모델링 실시설계
- 2024. 6~7월 : 리모델링 공사 착공·준공 및 기자재비 지원
- 2024. 8월 : 어린이집 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연도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3개소					
	연번	어린이집명	행정동	정원	개원일	비고
2022	1	시립별하어린이집	양촌읍	70명	2022.11.01.	
	2	시립어반베뉴어린이집	통진읍	40명	2023.01.02.	
	3	시립가온어린이집	통진읍	50명	2023.02.01.	
연도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4개소					
	연번	어린이집명	행정동	정원	개원일	비고
2023	1	시립아이꿈터어린이집	고촌읍	50명	2023.04.01.	전환
	2	시립엘리움어린이집	통진읍	60명	2023.08.01.	
	3	시립디에트르라운어린이집	통진읍	45명	2023.09.01.	
	4	시립햇살어린이집	양촌읍	70명	2023.09.01.	
연도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3개소					
	연번	어린이집명	행정동	정원	개원일	비고
2024	1	풍무속명어린이집	풍무동	300명	2024.06.(예정)	전환
	2	기쁨어린이집	구래동	53명	2024.06.(예정)	전환
	3	(가칭)고촌센트럴자이어린이집	고촌읍	45명	2024.08.(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375,000	162,288	164,005	48,707	
2023	454,005	449,069	-	4,936	
2024	80,000	-	-	80,000	2.13.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아동보육과	사업규모	2개소	1회추경 예산요구액 (천원)	215,000
부기명 (세부사업)	어린이집 확충(리모델링)	사업위치	풍무동 및 구래동		
위치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시설팀장 황미선	담당자	시설8급 서효주	전화	5336
-----	-------	------------	-----	----------	----	------

어린이집 확충(기자재비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풍무동 및 구래동
사업규모	2개소		
사업목적	저출산 극복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24조(비용의 보조)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해당조례	김포시 보육조례	제29조(보조금의 지급)
		제29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105,000	60,000	30,000	30,000	-45,000	
국비	52,500	30,000	15,000	15,000	-22,500	
도비	26,250	15,000	7,500	7,500	-11,250	
시비	26,250	15,000	7,500	7,500	-11,2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	
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시립어린이집 기자재비 지원 : 경정(60,000,000원)-기정(30,000,000원) - 15,000,000원 × 2개소 = 30,000,000원	30,000	

□ 예산요구 사유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2개소) 기자재비 지원
- 2024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량 2개소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1개소→3개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12월 : 사전적격심사 완료
- 2024. 1월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한 전환대상 선정
- 2024. 2월 : 보건복지부 승인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약
- 2024. 3~4월 : 리모델링 실시설계
- 2024. 6~7월 : 리모델링 공사 착공·준공 및 기자재비 지원
- 2024. 8월 : 어린이집 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3개소					
	연번	어린이집명	행정동	정원	개원일	비고
	1	시립별하어린이집	양촌읍	70명	2022.11.01.	
	2	시립어반베뉴어린이집	통진읍	40명	2023.01.02.	
2023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4개소					
	연번	어린이집명	행정동	정원	개원일	비고
	1	시립아이꿈터어린이집	고촌읍	50명	2023.04.01.	전환
	2	시립엘리움어린이집	통진읍	60명	2023.08.01.	
	3	시립디에트르라운어린이집	통진읍	45명	2023.09.01.	
2024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3개소					
	연번	어린이집명	행정동	정원	개원일	비고
	1	풍무숙명어린이집	풍무동	300명	2024.06.(예정)	전환
	2	기쁨어린이집	구래동	53명	2024.06.(예정)	전환
	3	(가칭)고촌센트럴자이어린이집	고촌읍	45명	2024.08.(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05,000	90,000	15,000	0	
2023	105,000	105,000	-	0	
2024	30,000	-	-	30,000	2.13.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아동보육과	사업규모	2개소	1회추경 예산요구액 (천원)	30,000
부기명 (세부사업)	어린이집 확충(기자재비 지원)	사업위치	풍무동 및 구래동		
위치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시설팀장 황미선	담당자	시설8급 서효주	전화	5336
-----	-------	------------	-----	----------	----	------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관내 어린이집
사업규모	솔터3단지 어린이집 등 2개소		
사업목적	노후화된 어린이집 개보수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 구축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36조 제24조제항제1호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4년 1회 추경 요구액 (D)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60,040	57,000	57,000	0	-3,040	
국비	30,020	0	28,500	-28,500	-30,020	
균특	0	28,500	0	28,500	28,500	
도비	15,010	14,250	14,250	0	-760	
시비	15,010	14,250	14,250	0	-76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어린이집 환경개선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터3단지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30,000,000원 (보육실 샷시, 석고보드 교체, 조리실 시공 등) · 시립호수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 27,000,000원 (조리실 시설 공사 및 방충망 교체) 	0	

□ 예산요구 사유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등 노후 어린이집 시설 증개축, 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4년부터 일반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편성 사업으로 전환되어 재원변경하여 예산 편성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2023.08. :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대상 수요조사 실시 및 현장조사
- 2024.03.~2024.10. : 사업집행
- 2024.11. : 사업정산 및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사업내용 : 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벨엘, 전원, 월곶 어린이집 3개소 83,224,000)
2023	- 사업내용 : 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통진, 마조 어린이집 2개소 58,040,000) - 사업내용 : 현원21인 이상 50인 미만 어린이집에 보존식기자재비 지원(늘푸른 어린이집 1개소 2,000,000)
2024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83,224	30,000	53,224	0	전원, 월곶 이월
2023	113,264	113,264	-	0	'22년 이월예산: 53,224 '23년 당해예산: 60,040
2024	57,000	-	-	57,000	2.13.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아동보육과	사업규모	1) 솔터3단지: 200㎡ 2)시립호수어린이집: 186㎡	1회추경 예산요구액 (천원)	57,000
부기명 (세부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위치	1) 김포한강8로 333(솔터3단지 어린이집) 2) 김포한강8로 420번길163(시립호수어린이집)		
현장사진					
	(솔터3단지 어린이집)		(시립호수 어린이집)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시설팀장 황미선	담당자	사회복지8급 최대진	전화	5335
-----	-------	------------	-----	------------	----	------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지역아동센터 13개소		
사업목적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으로 건전한 성장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59조제1호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해당조례	김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호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78,480	86,400	90,000	-3,600	7,920	
국비	39,240	43,200	45,000	-1,800	3,960	
도비	19,620	21,600	22,500	-900	1,980	
시비	19,620	21,600	22,500	-900	1,98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600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토요운영 지원 : 7,200,000원 : (경정)300,000원×12개월×2개소 - (기정)300,000원×12개월×5개소	= -10,800	
		· 특수목적형 지원 : 79,200,000원 : (경정)600,000원×12개월×11개소 - (기정)600,000원×12개월×10개소	= 7,200	

□ 예산요구 사유

-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특화서비스 제공 등 차별화(다문화, 야간운영 및 토요일 운영)된 프로그램 운영 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편성

□ 예산증감 사유

- 토요 운영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감액 : 5개소 → 2개소
- 특수목적형 운영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증액 : 10개소 → 11개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12. : 분기별 지역아동센터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 2024. 1. ~ 12. : 분기별 정산보고 및 확인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특수목적형 11개소 / 토요일운영 2개소 지원
2023	- 특수목적형 9개소 / 토요일운영 3개소 지원
2024	- 특수목적형 11개소 / 토요일운영 2개소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91,332	87,142	-	4,190	
2023	78,480	77,904	-	576	
2024	90,000	19,800	-	70,2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정진	전화	5592
-----	-------	------------	-----	------------	----	------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지역아동센터 15개소		
사업목적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서비스 질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59조제1호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해당조례	김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호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72,000	72,000	76,800	-4,800	0	
국비	0	0	0	0	0	
도비	14,400	14,400	15,360	-960	0	
시비	57,600	57,600	61,440	-3,84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800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 : 7,200,000원 : (경정)400,000원×12개월×15개소 - (기정)400,000원×12개월×16개소	= -4,800	

□ 예산요구 사유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질 높은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지원(미술, 댄스, 밴드, 만화 등)
- 특기적성프로그램 교사 파견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다양한 학습 욕구 충족

□ 예산증감 사유

- 특기적성 교육강사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감액 : 16개소 → 15개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12. : 분기별 지역아동센터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 2024. 1. ~ 12. : 분기별 정산보고 및 확인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교육강사 5명 지원 (15개소)
2023	- 교육강사 5명 지원 (15개소)
2024	- 교육강사 5명 지원 (15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57,600	52,130	-	5,470	
2023	72,000	68,292	-	3,708	
2024	76,800	18,000	-	58,8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정진	전화	5592
-----	-------	------------	-----	------------	----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한강4로 564(구래동, 지오프라자 804-806호)
사업규모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사업목적	피해아동의 안전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가족기능 회복 등 재학대 위험 감소를 위한 심층사례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45조
	위임규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시장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667,109	826,076	702,802	123,274	158,967	
국비	333,554	413,038	351,401	61,637	79,484	
도비	166,777	206,519	175,701	30,818	39,742	
시비	166,778	206,519	175,700	30,819	39,74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3,274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경정(703,402,000원) - 기정(702,802,000원) = 【난방비 지원 : 300,000원*2월*1개소】	600	
		·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 : 122,674,000*1개소	122,674	

□ 예산요구 사유

- 국제유가 상승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운영비(난방비) 추가지원
 - 지원 대상 : '23년 10월 기준 국비지원을 받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 지원 금액 : 600,000원(300,000원*2개월)
- 집중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학대피해가정 30사례를 선정하여 기초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정생활지원 서비스, 사후점검 및 관리까지 가정별 원스톱으로 심층사례관리 진행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3.12월~'24.1월 난방비 활용에 필요한 추가지원(30만원*2개월)으로 인한 예산 증액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2024년도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신규예산편성
 - * 2024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예산 확정내시 통보<경기도 아동돌봄과-386(2024.01.05.)>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반영	-
일자	2023.11.	-	-	-	-	-	-	-	2022.03.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난방비) 추가 지급
- 2024. 4. :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2024년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 운영비 지급
- 2024. 1. ~ 2024. 12. : 분기별 정산보고 및 확인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김포시 부담금 집행(97,378천원) -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개소에 따른 운영비 집행(160,878천원)
2023	-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집행(643,586천원)
2024	-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1분기 운영비 집행(176,3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311,065	160,878	-	150,187	
2023	667,109	643,586	-	23,523	
2024	702,802	176,300	-	526,502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이미선	담당자	사회복지7급 오미옥	전화	2260
-----	-------	------------	-----	------------	----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비공개 시설
사업규모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사업목적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복귀를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59조 제1호
	해당조례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2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474,568	496,388	495,788	600	21,820	
국비	189,824	198,552	198,312	240	8,728	
도비	142,372	148,918	148,738	180	6,546	
시비	142,372	148,918	148,738	180	6,54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 경정(496,388,000원) - 기정(495,788,000원) 【난방비 지원 : 300,000원*2월*1개소】	= 600	

□ 예산요구 사유

- 국가유가 상승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비(난방비) 추가지원
 - 지원 대상 : '23년 10월 기준 국비지원을 받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남아시설 1개소
 - 지원 금액 : 600,000원(300,000원*2개월)

□ 예산증감 사유

- '23.12월~'24.1월 난방비 활용에 필요한 추가지원(30만원*2개월)으로 인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반영	-
일자	2023.11.	-	-	-	-	-	-	-	2022. 1.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학대피해아동쉼터 남아시설 운영비(난방비) 추가 지급
- 2024. 1. ~ 2024. 12.: 분기별 정산보고 및 확인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개소('22년 12월 19일) -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운영비 집행(54,343천원)
2023	-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개소('23년 11월 1일) - 학대피해아동쉼터(남·여) 운영비 집행(247,571천원)
2024	- 학대피해아동쉼터(남·여) 1분기 운영비 집행(125,48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229,904	54,343	-	175,561	
2023	474,568	247,571	-	226,997	
2024	495,788	125,480	-	370,308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이미선	담당자	사회복지9급 조은별	전화	5534
-----	-------	------------	-----	------------	----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그룹홈 4개소		
사업목적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호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559,143	562,176	559,776	2,400	3,033	
국비	223,657	224,870	223,910	960	1,213	
도비	50,323	168,653	167,933	720	118,330	
시비	285,163	168,653	167,933	720	-116,51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400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 경정(562,176,000원) - 기정(559,776,000원) = 【난방비 지원 : 300,000원*2월*4개소】	2,400	

□ 예산요구 사유

- 국제유가상승 및 가스비 인상 등으로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이 없도록(난방비)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23년 10월 기준 국비지원을 받는 그룹홈 4개소
 - 지원 금액 : 시설 당 총 600,000원(300,000원*2개월)

□ 예산증감 사유

- '23년 12월 ~ 24년 1월' 난방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30만원*2개월)으로 인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난방비) 추가 지급
- 2024. 1. ~ 12. : 분기별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분기별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인건비, 운영비 4개소 지원
2023	- 인건비, 운영비 4개소 지원
2024	- 인건비, 운영비 4개소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453,426	408,644	-	44,782	
2023	559,143	486,563	-	72,580	
2024	559,776	142,344	-	417,432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이미선	담당자	사회복지8급 황선관	전화	2263
-----	-------	------------	-----	------------	----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 관내
사업규모	130명		
사업목적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입양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343,200	312,000	336,000	-24,000	-31,200	
국비	240,240	218,400	233,946	-15,546	-21,840	
도비	15,444	14,040	15,120	-1,080	-1,404	
시비	87,516	79,560	86,934	-7,374	-7,95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4,000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양육수당 지원 : 경정(200,000원*130명*12월)-기정(200,000원*140명*12월) =	-24,000	

□ 예산요구 사유

- 만18세 미만의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수당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내시서 반영에 따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량 감소(140명 → 130명)
- 사업량 감소에 대해서는 월별 집행실적에 맞춰 소요액 추계 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12. : 매월 20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입양아동 144명 지원
2023	- 입양아동 152명 지원
2024	- 입양아동 127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360,000	347,000	-	13,000	
2023	343,200	329,800	-	13,400	
2024	336,000	25,400	-	310,6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이미선	담당자	임기제마급 안가영	전화	2830
-----	-------	------------	-----	-----------	----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 관내
사업규모	장애아동 2명, 의료비 지원 4명		
사업목적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입양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0	13,724	11,020	2,704	13,724	
국비	0	9,607	7,714	1,893	9,607	
도비	0	618	496	122	618	
시비	0	3,499	2,810	689	3,49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704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의료비 지원 : 676,000원*4명	= 2,704	

□ 예산요구 사유

- 만18세 미만의 장애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장애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내시서 반영에 따른 의료비 지원 항목 추가로 예산 증액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12. : 매월 20일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장애입양아동 1명 지원
------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1,020	3,857	-	7,163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이미선	담당자	임기제마급 안가영	전화	2830
-----	-------	------------	-----	-----------	----	------

입양비용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 관내
사업규모	1명		
사업목적	입양 알선 비용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입양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32조(비용의 수납 및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제1항의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5,400	2,700	5,400	-2,700	-2,700	
국비	3,770	1,890	3,780	-1,890	-1,880	
도비	242	122	243	-121	-120	
시비	1,388	688	1,377	-689	-7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700	
입양비용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입양비용 : 경정(2,700,000원*1명) - 기정(2,700,000원*2명) =	-2,700	

□ 예산요구 사유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국내 입양한 경우 입양기관에 입양 알선비용을 정액 지원
- 보건복지부허가기관 2,700천원/ 시도허가기관 1,000천원

□ 예산증감 사유

- 내시서 반영에 따른 입양비용 지원 사업량 감소(2명 → 1명)
- 사업량 감소에 대해서는 월별 집행실적에 맞춰 향후 소요액 추계 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12. : 국내 입양 발생 시 수시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입양아동 2명 지원
2023	- 입양아동 2명 지원
2024	- 입양아동 1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0,800	5,400	-	5,400	
2023	5,400	5,400	-	0	
2024	5,400	2,700	-	2,7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이미선	담당자	임기제마급 안가영	전화	2830
-----	-------	------------	-----	-----------	----	------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 관내
사업규모	1명		
사업목적	미혼모 등 입양동의 전 입양숙려기간(1주일) 제고 및 보호대상아동 발생 예방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입양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33조
	제13조(입양동의의 요건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33조(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요보호 아동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700	700	700	0	0	
국비	490	485	490	-5	-5	
도비		0			0	
시비	210	215	210	5	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 700,000원*1명	= 0	

□ 예산요구 사유

- 미혼모 등이 출산 후 입양숙려기간(1주일) 지원비(가정 내 보호, 미혼모자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제공
- 숙려기간을 통하여 보호대상아동 발생 예방

□ 예산증감 사유

- 내시서 반영에 따른 국비, 시군비 내시비율 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12.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을 신청한 산모 발생 시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신청자 없음
2023	- 신청자 없음
2024	- 신청자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700	-	-	700	
2023	700	-	-	700	
2024	700	-	-	7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이미선	담당자	임기제마급 안가영	전화	2830
-----	-------	------------	-----	-----------	----	------

입양축하금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김포 관내
사업규모	1명		
사업목적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입양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4,000	2,000	4,000	-2,000	-2,000	
국비	2,800	1,400	2,800	-1,400	-1,400	
도비	180	90	180	-90	-90	
시비	1,020	510	1,020	-510	-51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	
입양축하금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입양축하금 : 경정(2,000,000원*1명) - 기정(2,000,000원*2명) =	-2,000	

□ 예산요구 사유

- 가정법원의 입양 확정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아동을 국내 입양한 모든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축하금 지급으로 국내입양 활성화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내시서 반영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사업량 감소(2명 → 1명)
- 사업량 감소에 대해서는 월별 집행실적에 맞춰 향후 소요액 추계 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3.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 ~ 12. : 입양축하금을 신청한 입양가정에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입양축하금 2명 지원
2023	- 입양축하금 2명 지원
2024	- 입양축하금 1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8,000	4,000	-	4,000	
2023	4,000	4,000	-	0	
2024	4,000	2,000	-	2,000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이미선	담당자	임기제마급 안가영	전화	2830
-----	-------	------------	-----	-----------	----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사업위치	양곡1로68번길 37, 1층
사업규모	14개 읍면동, 김포시 전 지역 취약계층 아동 354명		
사업목적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아동복지법		제37조 제1항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최종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1회추경 요구액 (D)		
계	211,148	224,410	222,010	2,400	13,262	
국비	168,918	179,528	177,608	1,920	10,610	
도비	12,669	13,465	13,321	144	796	
시비	29,561	31,417	31,081	336	1,85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400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현장 슈퍼바이저 수당: 200,000원*1인*12개월	= 2,400	

□ 예산요구 사유

- 현장 슈퍼바이저 선임 및 운영비 구축을 통해 내부 슈퍼비전 강화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1월 김포시 현장 슈퍼바이저 선임을 통해 경기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확정내시에 슈퍼비전 구축비가 신설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3.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2. 7. : 드림스타트 개소(통진읍사무소 내)
- 2012. 10. :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양촌읍 노인복지회관 내)
- 2013. 2. : 드림스타트 전담팀 구성(통진읍, 양촌읍 관리)
- 2015. 3. : 3개면(대곶, 월곶, 하성) 확대 관리
- 2016. 3. : 김포시 전지역 사례관리 확대
- 2018. 4.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전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4. 2. 1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시 취약계층아동(0세~만12세) 1,482명중 310명 사례관리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 1인당 관리 아동 수(62명) - 부모교육(금융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양교육, 성교육, 가족문화체험활동(도자기공예, 쿠키클래스, 아쿠아리움, 영화관람 등), 동병하치(한방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양육자 힐링프로그램, 축구교실, 캘리그래피, 미술치료, 방송댄스 등) 운영 - 지역사회 후원 발굴(신규 및 재협약 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센터2개소, 제과점2개소, 체육학원3개소, 사진관1개소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시 취약계층아동(0세~만12세) 1,440명중 352명 사례관리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 1인당 관리 아동 수(70명)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양육자 힐링프로그램, 캘리그래피, 미술치료, 도서지원, 방송댄스 등) 운영 - 부모교육(부모마음 코칭교육), 영양교육, 가족문화체험활동(도자기공예, 베이킹 클래스, 응급처치교육, 워터파크, 영화관람 등), 동병하치(한방치료), 안경제작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후원 발굴(신규 및 재협약 7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1개소, 심리센터2개소, 학원3개소, 제과점1개소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시 취약계층아동(0세~만12세) 1,476명중 354명 사례관리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 1인당 관리 아동 수(71명) - 지역사회 후원 발굴(신규 및 재협약 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1개소, 제과점1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201,850	153,583	-	48,267	
2023	211,148	202,269	-	8,879	
2024	222,010	6,713	-	215,297	2.1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드림스타트팀장 전표대	담당자	사회복지8급 신지수	전화	5600
-----	-------	-------------	-----	------------	----	------